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2021학년도 제9차 회의록	
일 시	2021.12.29.(수), 10:00 ~ 10:30	장 소	미래관 1006호
참석의원	김진경 의원, 정광희 의원, 김재환 의원, 임지영 의원, 황태선 의원, 오일숙 의원, 안주미 의원, 이정훈 의원, 송다슬 의원, 구승규 의원, 배진건 의원, 장용석 의원		
불참의원			
간 사	서원주 기획예산팀 차장, 고광호 기획예산팀 주임		

I. 안 건

○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II. 회의내용

○ 김진경 의장(이하 의장)이 의원정수 12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안을 상정하고 서원주 기획예산팀 차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 기획예산팀 차장이 배포된 유인물을 토대로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함

○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 기획예산팀 차장이 장애학생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학칙 개정과 학제전환,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 등의 사유로 인한 학칙의 개정임을 설명함

현행	개정(안)
제3조 (부속기관) ① 대학교에 부속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 2. (생략) 3. 소수학생지원센터 <개정 2015.2.1., 2016.5.1.> 4. ~ 11. (생략) 12. 양성평등센터 <신설 2016.1.1.> 13. ~ 17. (생략) ② (생략)	제3조 (부속기관) ① 대학교에 부속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학생지원센터 <개정 2015.2.1., 2016.5.1., 2022.1.00> 4. ~ 11. (현행과 같음) 12. 인권센터 <신설 2016.1.1., 2022.1.00.> 13. ~ 17.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 (학년도, 학기) ①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u>다만 해당 학년도의 수업은 4주 범위 내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u> ②각 학년도는 2개 학기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u>필요 시 4개 학기로 구분할 수 있다.</u>	제27조 (학년도, 학기) ①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0.> ②각 학년도는 2개 학기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u>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업은 학기 개시일부터 2주 범위 내에서 개강할 수 있다.</u> <개정 2022.1.00.>

현행	개정(안)
제32조 (교육과정 및 교과목) ①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각 대학 및 학과의 교과 과정에 따른다. ② ~ ⑥ (생략)	제32조 (교육과정 및 교과목) ①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교과과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0.>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5 (온라인 공개강좌 인정학점) ①학점인정 가능 온라인 공개강좌 제공 기관에서 업로드한 강좌를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0.]
제55조 (학년수료) ①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는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졸업학점의 1/4, 2학년 졸업학점의 1/2, 3학년 졸업학점의 3/4 ② (생략)	제55조 (학년수료) ①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는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 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수료학년/학과수업연한) × 학과졸업학점 <개정 2022.1.00.> ② (현행과 같음)
- 김진경 의장이 학칙 제3조(부속기관)의 명칭변경에 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기획예산팀 차장이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양성평등센터를 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가 2022년 6월 29일 부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학칙을 개정하여 소수학생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명칭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을 설명함 - 배진건 의원이 학칙 제27조의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예산팀 차장이 등록금 및 장학금 반환 기준에 따른 학기 개시일의 구체적인 명시를 위해 개정함을 설명함 - 장용석 의원이 학칙 제32조 개정 및 33조의5 신설에 대해 질의함 - 기획예산팀 차장이 교과목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게 되었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게 됨을 설명함 - 임지영 의원이 학칙 제55조의 개정에 대해 질의함 - 기획예산팀 차장이 약학대학이 학제 전환을 통해 통합 6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학사운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함 ○ 의장이 상정된 안전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기획예산팀 차장에게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0조(회의결과)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설명하다.	
III. 폐회선언 ○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확 인	의 원	서 명	의 원	서 명
	김진경	金鎭	안주미	안주미
	정광희	정광희	이정훈	이정훈
	김재환	김재환	송다슬	송다슬
	황태선	황태선	장용석	장용석
	임지영	임지영	배진건	배진건
	오일숙	오일숙	구승규	구승규